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5.>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은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합격사정) 합격사정은 학과별 사정과 대학원위원회 사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조(학과별 사정) 학과별 사정에 있어서는 학과교수회의에서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한다.

제5조(대학원위원회 사정)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에서 제청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하에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1. 시험점수의 합격기준여부를 검토한다.
2. 학과별 재적인원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3. 학과별 사정에서 합격에 제청된 자라도 대학원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할 수 있다.
4. 학과별 사정에서 불합격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시킬 수 없다.

제6조(입학의 허가)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는 소정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입학이 허가된다.

제7조(재입학) ①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자는 등록기간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2. 학점인정원
3. 재입학전 재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수업, 학점, 시험 및 학위수여

제1절 수업 및 학점

제8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또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2.8.>

②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3.,

2016.10.5.>

(단위: 학점)

구 분	학 과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학위논문 제출자	일반행정학과	4	20	24
	사법행정학과 의회정치.안보정책학과	6	18	
	사회복지학과	9	15	
졸업시험 응시자	일반행정학과	4	28	32
	사법행정학과 의회정치.안보정책학과	6	26	
	사회복지학과	9	27	36

③ 전공선택과목중 최소 6학점은 각 전공별 개설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제9조(교과과정 선정) 각 학과 학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과별·전공별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0조(교과과정의 개정) ① 확정된 교과과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각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대학원 장에게 제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각 학과 학과장은 개강 1월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선정하고 설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절 수강신청, 전공선택 및 변경

제12조(수강신청) 대학원생은 매 학기초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하여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1.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개강일전까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수강신청서 제출시 대학원 학생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시에는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한 후 정해진 모든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과목 변경) ①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을 인정한다.

1. 대학원 교수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설강과목을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

-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의 수강과목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변경원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부에 제출하여 교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마감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제14조(추가등록) ①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8.>

- ② 추가등록금은 수강하는 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8.>

제15조(전공선택 및 변경) ① 신입생은 제1학기 수강신청 기간중에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교학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 또는 제3차 학기 등록기간내에 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성적 및 시험

제16조(성적계산) 학칙 제21조에 근거한 교과목별 성적은 시험성적과 출석성적을 합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제17조(출석성적) 제16조의 출석성적의 인정은 해당 학기 수업에의 출석이 강의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8조(결석사유의 인정)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9조(학점인정)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70점 이상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20조(학점의 특별인정) 전공변경자 및 대학원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점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학점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

- 1. 전공변경자의 이수학점은 새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를 인정한다.
- 2.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유사전공과목 3과목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1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정의 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22조(수료학점 및 인정시기) ①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는 4회등록을 필한 자로서 학위논문 제출자는 24학점 이상, 졸업시험 응시자는 32학점(단,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과정수료인정학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한 평균학점의 기준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학업성적의 평균성적을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성적정정) ① 교과목별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성적정정원
2. 정정사유서
3. 시험답안지 등 성적근거자료

② 성적정정의 기간은 다음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5조(결시신청) 정г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결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장·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의 경우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제26조(추가시험) 학칙 제20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험으로서 각 교과목에 대한 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추가시험의 과목, 기간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시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
 - 나. 전학기 교과목성적이 69점 이하인 자(다만, 출석미달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한하며, 응시기회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최고성적으로 한다.

제27조(학위신청자격시험) ① 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신청자격시험의 과목, 기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 학기초 1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공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대학원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③ 석사학위신청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을 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는 학점에 관계없이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석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서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16학점 이상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3.6.17.>

④ 시험위원은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중에서 대학

원장이 위촉한다.

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과목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이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전공필수 2과목 이상을 포함한 3과목으로 하고,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이고 시간은 60분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

⑥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⑦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자는 최소 수업연한 경과후 1년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중 재응시 할 수 있다.
3. 종합시험의 응시과목중 불합격과목이 2과목 이상일 때에는 전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과목일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⑧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얻기 위하여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학과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3. 소정의 전형료 납부

제4절 학위논문 및 졸업시험

제28조(학위논문제출자격) ①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며 학위신청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

② 대학원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29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의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배정한다.

제30조(논문지도교수의 배정 및 졸업시험 신청) ① 학생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3차 학기초(또는 2학기초)에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을 하고,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추가학점이수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3차 학기 등록 전까지 정해진 기간 내 학과장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④ 학위논문제출을 통한 학위취득 혹은 추가학점이수를 통한 학위 취득간의 변경 신청은 4차 학기 말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을 얻어 가능하며,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23.2.14.>

제31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전공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제32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연구제목, 연구, 목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4차 학기(또는 3차학기)에 작성·발표하고,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논문제출 3월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중간보고서 제출) 제32조의 연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지도요지, 의견, 기타 진행사항을 기록한 학위논문 중간보고서를 4차학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제34조(학위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여 영문초록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10.5.>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초록을 앞에 영문초록은 뒤에
2.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초록을 앞에 국문초록은 뒤에

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인접전공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학위논문 제출시기 및 졸업시험 시행시기) ① 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 2회로 한다.

② 졸업시험은 32학점(단,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을 등록 신청한 자에 한하여 매년 5월과 11월에 시행한다. <개정 2014.1.22.>

제36조(학위논문제출 및 졸업시험응시 시한) 학위논문 심사 및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 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37조(학위논문 제출 및 졸업시험응시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에 논문제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
4.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23.2.14.>

③ 졸업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구비하여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논문심사위원 및 졸업시험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지도교수

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③ 졸업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39조(논문심사위원장) ①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중에서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재하고,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0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해외여행, 질병, 사고, 신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41조(논문의 예비심사) ①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한 학술이론의 타당성, 연구의 가치, 내용 및 체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술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심사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발표하여 예비심사(구술시험 병행)를 받는다.

③ 논문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문장, 부논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내 완성가능성을 판정한다.

⑥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이 부실하여 학기내 완성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⑦ 예비심사의 결과는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2조(논문의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나를 검토하며 자구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43조(논문의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회에 한하여 1학기이상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내에 본 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의 절차를 밟아서 재심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4조(논문평가)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5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6조(논문심사결과보고 및 자격사정) ① 학위청구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의 결과를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제47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 및 편제, 서술방법 등은 대학원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제48조(학위논문 제출부수) ① 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4부(하드카버)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8.>

② 제1항의 논문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학위수여)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50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 및 복학

제51조(휴학절차) 학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입대휴학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에 의한 경우는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2.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휴학원서

제52조(휴학시기 및 기간) ① 일반휴학은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에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② 군입대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 일반휴학 기간중 입대한 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대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여섯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외근무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하되 1회 휴학으로 본다. <개정 2011.2.8.>

제53조(복학절차) ①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전에 다음 각 호의 복학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증
3. 휴학확인서(소정양식)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 것으로 본다.

제54조(복학생 등록)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복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2절 징계, 퇴학 및 제적

제55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처분한다.

1. 학력위조 또는 학력부실자
2. 장학금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위조자
3. 학생의 신분을 탈선하여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학칙 및 대학원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제적 처리한다.

1.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절차를 필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제5장 연구과정

제57조(연구과정의 목적)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9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60조(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목) ①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표에 의한다.

구 분 과 정	공통필수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계
연구과정	2학점(1과목)	10학점(5과목)	12학점(6과목)

제61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62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대학원장은 연구생에게 지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대학원 보고서 작성법에 따른다.

③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 실적증명서를 교부한다.

제6장 장학금

제63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 선발시의 성적평가는 졸업(수료)학점 인정과목의 성적으로 하고 전학기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64조(학과장) 학과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5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의 교수 및 부교수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교내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4. 각종 학술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66조(교과목 담당제한) 동일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대학원의 교과목은 학기당 1과목(2학점 또는 3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2.8.>

제67조(강사제청) 교과운영상 교외의 자를 강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장은 개강 1월전에 시간강사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학과장은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간사) 대학원 교학행정실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4.1.22.>

제70조(보칙)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호, 1998.10.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1999.2.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 2000.5.8.>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 2001.2.16.>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 2002.9.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발령당시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종전 세칙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세칙을 적용한다.

② 이 세칙 발령당시 사회복지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제30조제3항의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수료이전에 추가학점이수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59호, 2003.6.1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 2003.12.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2항의 개정세칙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호, 2007.8.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2008.1.2.>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 2008.8.22.>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 2009.1.12.>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 2009.12.23.>

①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하되 세칙 제8조제1항은 개정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08호, 2011.2.8.>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 2014.1.22.>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 2016.10.5.>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당시 위기관리학과의 재적생 및 수료생 등에게는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 2023.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4항의 개정사항은 이 세칙 시행일 이전 입학자인 수료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과장 승인을 얻어 학위과정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정책대학원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책대학원 학과(전공) 석
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인천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정책대학원

연구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책대학원 학과(전공)연구과
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인천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정책대학원

연 실 제 호

연구 실적증명서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책대학원 학과(전공)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